



임시공역 지정 이유

- ✓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최저비행고도는 150m(500ft)
-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비행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는 150m 미만의 고도로 관제권과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비행가능
- ✓ 150m 이상을 비행하려는 무인비행기 등은 안전조치 필요
- ✓ 항공기들이 해당정보를 미리 알 수있도록 "임시공역"을 설정하여 안전조치

공역지정 신청 체크리스트

- ✓ 공역지정 요청 기한 확인 → 2주 전 신청
- ✓ 필수정보 확인 → 수평·수직 범위, 기간
- ✓ 주변공역 현황 확인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 ✓ 신청문서 접수 및 지정결과 확인 → 문서24

임시공역 지정 Q&A

임시공역 설정 신청 후 지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관련 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역관리규정)

임시공역 지정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며칠인가요?

3개월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길어지면 공역 지정 검토 중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간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24를 통해 공역설정 신청 후, 진행 상황이 궁금해요.

항공교통본부(공역정보과)에서는 신청인에 한하여 **공역지정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53)668-0254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문자로 처리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국가공역 이용자를 위한 임시공역 지정안내



공역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영구공역

공역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

임시공역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 범위의 공역



관련법규

- ✓ **공역 관련**
 - ①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 ①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 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준수사항)

임시공역 설정절차



임시공역신청시 필요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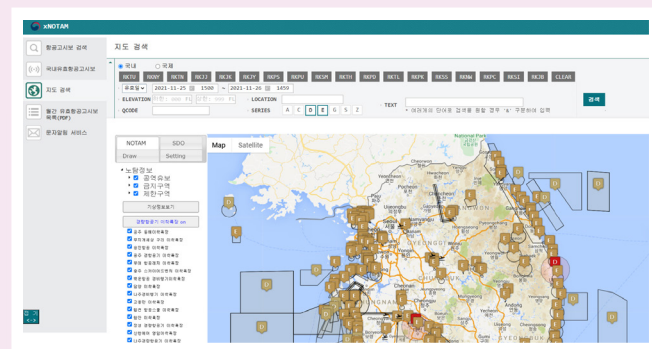
신청서 포함내용

- 목적 | 공역사용 목적
- 구역 | 위·경도 좌표 및 반경, 폭을 포함하는 경로 등
- 고도 | 상한 한계, 피트(FT) 단위, AGL(지면)/MSL(해면) 구분
- 기간 | 일자 및 시간(한국표준시)
- 기타 | 비상연락망, 안전대책 등



전자 항공고시보 활용 방법

전자 항공고시보(x-NOTAM)을 활용하여 임시공역 신청 전 공역지정 가능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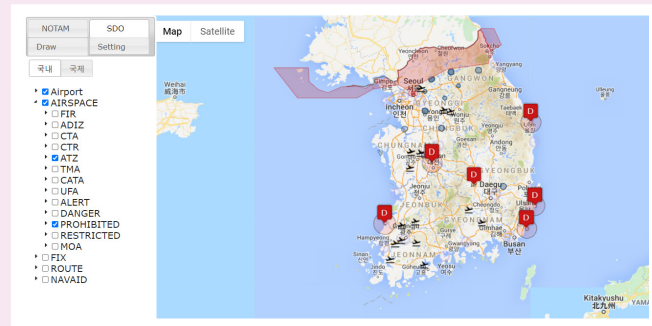


01 STEP

- 01 AIM 항공정보관리체계 ▶ aim.koca.go.kr 접속
- 02 xNOTAM 항공고시보 클릭 → 지도 검색으로 들어가 원하는 유효일 입력 후 검색
- 03 한국표준시(KST)가 아닌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시간 - 9시간을 계산하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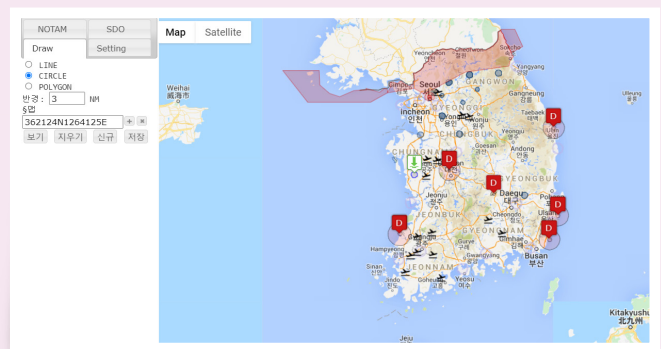
※ 예시

- ① 17시 30분(KST) → 08시 30분(UTC)
- ② 10월 09일 07시~16시(KST) → 10월 08일 22시 ~10월 09일 07시(UTC)



02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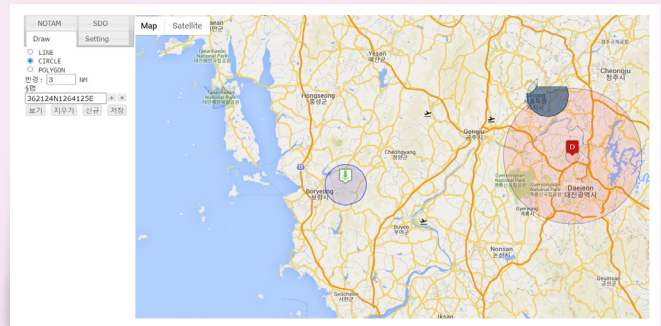
- 01 지도의 가시성 향상을 위해 공역유보 정보와 제한 구역 정보 체크표시를 해제 후
- 02 SDO(고정데이터) 탭에서 AIRPORT(관제권) 체크
- 03 AIRSPACE 탭 중 ATZ(비행장교통구역), PROHIBITED (비행금지구역) 체크



03 STEP

- 01 DRAW 탭에서 공역신청 예정구역 정보(60진법 좌표 사용) 입력 후 보기 클릭

 - LINE - 좌표 입력 후 반경을 입력하면 경로 표시
 - CIRCLE - 중심점 좌표와 반경을 입력하면 원 표시
 - POLYGON - 좌표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다각형 표시
 - 단위를 NM(해리)로 변환 후 입력



04 STEP

- 01 해당 공역이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 비행금지구역(P518)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 일 때 공역지정이 가능하므로 문서 24를 통해 공역정보과로 공역 사용신청!
- 02 해당 사이트에 입력되지 않은 군 절차, 공항 저고도 비행 경로 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확인 가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A: Ultra light vehicle flight restricted area)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현재 전국에는 2021년 12월 30일 기준 31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Ultra light vehicle flight area)이 존재, 이를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구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 UA구역에선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 및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지정현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AIM 항공정보관리체계 aim.koca.go.kr에 접속한 후 항공정보간행물 AIP ENR 5.5(AERIAL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참고!

